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26 민사부

### 판 결

사 건 2014가합545485 사고구역회결의무효확인  
2014가합576069(병합) 사고구역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영립, 유승용, 신동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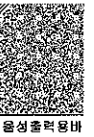
피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종로지방회  
서울 종로구 통일로 266, 복합상가 2층(무악동)  
대표자 감리사 서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기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29.

### 주 문

1.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5. 7. 피고의 실행부위원회에서 한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에 대한 사고구역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음성출력용바

3. 소송비용 중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박호영이 부담하고,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4. 5. 7. 피고의 실행부위원회에서 한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에 대한 사고구역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소속의 개체교회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조직은 개체교회에 등록된 모든 교인들로 구성된 의회인 당회를 비롯하여,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 교회가 속한 구역회의 경우 그 구역 내에 원고 교회만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원고 교회가 속한 종로지방의 개체교회와 구역회를 감독하는 지방회가 피고 종로지방회이다. 원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교회의 권사 등 임원으로서 구역회원들이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이하 '교리와 장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교리와 장정 [328] 제33조 제6항). 구역회는 정기구역회, 임시구역회로 구분되는데,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지방회의 대표자인 감리사가 소집하고, 임시구역회는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감리사가 소집한다(교리와 장정 [324] 제29조 제1항, 제2항).

#### 나. 원고 교회의 피고에 대한 구역회 소집 요청

1) 서울특별시는 2012. 2. 6. '이대동대문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교회의 부지 및 건물을 수용하였다. 원고 교회는 2013. 6. 3. 구역회원 65명의 명부를 첨부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감리사 강효성에게 원고 교회의 임시예배처소 이전을 위한 구역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강효성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은 2013. 7. 1. '유지재단이 이전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 조건' 하에 원고 교회의 임시예배처소 이전을 승인하였다. 원고 교회는 2013. 8. 2. 재차 위 강효성에게 임시예배처소 이전을 위한 구역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자 강효성은 2013. 8. 7. "기본재산 관리를 위한 합법적 구역회가 없었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총회실행부의 결정이 나온 후에 구역회를 요청하라."고 하면서 그 요청에 불응하였다.

2)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2. 2. 6. 원고 교회의 부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금 19,340,197,320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 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은 2013. 7. 17. "전체 공탁금 200억 원 상당 중 120억 원 상당은 원고 교회의 새로운 교회 부지 매수 및 건물 신축에 사용하고, 나머지 80억 원은 원고 교회의 기념교회 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하며, 본 합의사항은 원고 교회가 구역회 결의를 받는 경우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교회 및



윤성훈역량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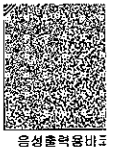
그 65명의 구역회원들은 2013. 7. 19. 피고의 감리사 강효성에게 이 사건 합의 추진을 위한 구역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강효성은 2013. 7. 23. "구역회원들의 서명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구역회원들의 새로운 서명 및 2013년 구역회원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교회는 2013. 7. 25. 구역회 개최 요청을 위한 구역회원 67명의 연명부 및 총 구역회원 142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재차 구역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강효성은 그 요청에 불응하였다.

3) 원고 교회는 2013. 8. 7. 재차 강효성에게 '임시에배처소 이전 및 이 사건 합의 처리'를 위한 구역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강효성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3. 11. 6. 에도 구역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강효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 교회의 구역회원 73명은 2013. 12. 30.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구역회 소집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2014. 6. 23. '이 사건 청구는 행정재판 청구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 다. 서기종 목사의 출교 및 원고 교회의 정기당회 개최 경위

1)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서울연회 심사위원회는 2013. 6. 24. 원고 교회의 담임자인 서기종 목사를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였다.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2013. 9. 9. 서기종 목사에게 대한 각 기소사실 중 '교회재산의 매매계약 위반', '임시구역회 결의시 기망행위', '법정난동', '집단폭행', '집단폭행 교사방조'의 범과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기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여, 서기종 목사를 근신 5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2) 한편 원고 교회의 담임자 서기종 목사는 교적부 정리 및 구역회의 회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3. 11. 24.에 원고 교회 정기 당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음성출력용바코드

그로부터 2주일 전인 2013. 11. 10. 주보를 통하여 정기 당회의 개최를 공고하였다. 그런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이하 '총회재판위원회'라 한다)는 2013. 11. 22. 서기종 목사에게 대한 기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서기종 목사에게 대하여 출교를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출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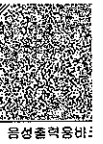
3) 서기종牧사는 2013. 11. 24. 당회 의장으로서 원고 교회 정기 당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회'라 한다), 그 당회에서는 교적부를 정리하고, 2014년도 구역회원에 해당하는 권사, 속장 등을 선출하며, 선교회장 등을 인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4)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대표 김영현 감독은 2013. 12. 11. 원고 교회 담임자인 서기종 목사에게 이 사건 출교판결에 따라 서기종 목사를 출교한다는 행정 집행을 통고하였다. 이에 서기종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600호로 그 판결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서기종 목사는 이 사건 출교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903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33255) 계속 중이다.

#### 라. 피고의 사고구역회 결의

1) 교리와 장정 [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제10항은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5. 7. 피고의 산하 기관인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 교회에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금성출력용바코드

없다."고 하면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 교회에 대한 사고구역회 결의(이하 '이 사건 사고구역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5, 28, 33, 34, 52 내지 6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구역회 결의는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 교회는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구역회 결의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교회 구역회원들의 거듭된 임시구역회 소집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기구역회도 소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보아 이 사건 사고구역회 결의를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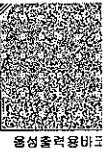
2) 사고구역회 결의를 규정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인 개체교회의 의사결정권이 그와 전혀 관계없는 단체인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로 이전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구역회 결의를 하면서 원고 교회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를 하거나 처분의 이유를 제시한 바도 없고, 의견제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당사자능력 부존재 주장

1) 먼저 피고는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의 산하조직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단체가 다른 사단의 하부 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 3) 피고의 당사자능력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감리회가 '연회 및 지방 경계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서울 종로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감리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



음성출력용바코드

고 설립된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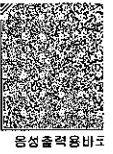
② 피고는 감리회의 하부 조직으로서 상급단체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자세하게 규정된 지방회의 목적, 대표자(감리사)의 자격 및 임기·선출 방법·직무에 관한 사항, 부서 조직에 관한 사항,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③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중 의회법에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회(피고 자체와는 구별되는 사원총회 성격의 모임을 말한다), 지방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지방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이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의 성격을 가진 실행부위원회, 인사 문제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의 설치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는 각 의결기구를 통해 다수결 원칙에 입각하여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④ 피고는 집행기관으로서 대표자인 '감리사'를 두고 있으며, 감리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피고 내부에 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 등의 조직을 갖춰 놓고 있다. 감리사는 위 각 부서를 통할하여 지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 처리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

⑤ 피고의 회원은 ㉠ 해당 지방에 소속한 연회 회원으로서 교역자, ㉡ 지방교회에 파송 받은 장로, ㉢ 서리담임자, 전도사, ㉣ 각 구역의 권사 대표 등 신도 대표자, ㉤ 남선교회, 여선교회 등 각 개체교회의 기관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상관없이 단체 그 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

⑥ 피고는 그 산하 개체교회에서 납입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여 독자



문성출력용바코드

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회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기관을 통하여 이를 집행하는 등 그 상부단체인 감리회, 연회 또는 하부단체인 개체교회와 완전히 분리된 회계를 갖고 있다.

#### 나. 원고 교회 직무대행자 박호영의 대표권 부존재 항변

##### 1) 피고의 주장

원고 교회의 대표자였던 서기종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출교된 이후 원고 교회에는 그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서는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가 지명하거나 담임자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 감리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142] 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제2항). 그런데 감리사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 직무대행자 지명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소집한 바 없고, 부목사 박호영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위임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 교회의 소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2) 판단

가) 살피건대, 총회재판위원회가 2013. 11. 22. 원고 교회의 대표자였던 서기종 목사를 출교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서기종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2600호로 그 판결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 또한 서기종은 위 법원 2013가합89032호로 본안의 소인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0.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서기종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3325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음성출력용바코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갑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기종은 위 출교 판결 후인 2013. 11. 25. 부목사 박호영을 직무대행자로 지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부목사 박호영은 직무대행자 지명 권한이 없는 서기종에 의하여 지명된 것이므로 원고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교리와 장정 [933]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제1항에서는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관련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해당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의 대표인 김영현 감독은 2013. 12. 11. 서기종에게 '2013. 11. 22.자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에 따라 교리와 장정 [933] 제5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집행을 통고한다'는 내용을 보냈으므로,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은 그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가 그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담임자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담임자 출교판결 선고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담임자가 담임자 유고를 이유로 그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출교판결을 받은 담임자로서는 그 판결 집행 직전에 자신의 측근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출교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출교판결을 받은 담임자는 그 집행 전이라도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획위원회가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음성출력용바코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기종이 출교판결의 행정집행에 따라 2013. 12. 11. 비로소 원고 교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출교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인 2013. 11. 25.에는 자신의 유고를 이유로 부목사 박호영을 직무대행자로 지명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교회는 피고의 감리사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 유고 상황을 알면서도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서 직무대행자 대표권 유무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6, 7, 22, 23,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박호영에게 2013. 12. 23. '감리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연회본부로 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고, 2014. 7. 28. '박호영은 적절한 담임목사 직무대행자가 아니고,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목사를 파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교회는 서기종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박호영의 대표권을 주장하면서 직무대행자 지명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교회의 적절한 대표자 자격을 다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 교회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표시된 부목사 박호영이 원고 교회의 적절한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교회의 청구부분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4. 원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구역회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의 감리사가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아닌 사단인 원고 교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경우 원고 교회의 총유재산인 부동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교



음성출력용바코드

인들의 의사가 배제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사고구역회의 지정요건인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구역회 결의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의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임시에배처소 이전 및 이 사건 합의 처리'는 교리와 장정 [32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제6항에 의하면 총회의 직무가 아닌 구역회의 직무이다. 그럼에도 원고 교회 구역회원들의 '임시에배처소 이전 및 이 사건 합의 처리'를 위한 구역회 소집 요청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교회의 구역회 소집 요청에 불응하면서 구역회의 3개월 이상 미개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고구역회 결의는 그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교회가 구역회를 개최하기 위한 구역회원을 선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회에서 구역회원을 선임 또는 인준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구역회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25, 26,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권사, 속장의 임명 및 청장년회장, 청년회장의 인준 결의를 무효라고 볼



음성출력용바코드

수 없으므로, 원고 교회의 2014년도 구역회는 적법하게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교회 구역회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사고구역회 결의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① 이 사건 당회는 교리와 장정 [306]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 개최가 예정된 정기당회이다.

② 이 사건 당회 개최 공고는 2013. 11. 10. 당시 적법한 담임자 지위에 있었던 서기종 목사에 의하여 당회 2주일 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고, 2013. 11. 24. 당회 당일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한 서기종에 대한 출교판결 집행은 2013. 12. 11. 통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회의 의사 진행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당회에는 원고 교회의 교인 199인이 참석하였고, 참석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가사 의사를 진행한 서기종의 대표권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회의 결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19조는 당회의 직무를 당회 회원의 명부조사, 임원 보고, 집사, 권사, 감사, 교회학교장 선출,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청장년선교회장, 청년회장의 인준, 속장 선출, 장로후보자 선출, 제명의결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이 사건 당회의 안건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회 공고 당시 그 주보에 "1) 임시예배처소에서의 첫 예배: 11/17(주일) 100주년 기념관(종로 5가), 2) 2014년을 위한 당회: 11/24(주일) 2부 예배 후"라고 기재하여 그 장소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갑 31호증(당회 회의록)이 이 사건 당회 이후 사후조작한 것이라는 점을 인



음성출력용바

정할 증거가 없고, 위 회의록에 이 사건 당회 진행을 위한 유인물인 갑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회에서 구역회원인 권사, 각 부서의 임원들이 연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교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윤강열



판사

서경민

서경민



판사

이보경

이보경





음성출력용바

# 정본입니다.

201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임상규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